2019학년도 전주서원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안 건 번 호	2

발의연월일 : 2019. 7. 9.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김 소 라

1. 제안이유
학교생활규정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2. 관련근거: 내부결재 전주서원초-(2019. 3. 27.)

3. 주요내용
가. 학생선도위원회에 관한 내용
나. 폭력 등에 관한 대처에 관한 내용
다. 소지품 검사 및 화장에 관한 내용
라. 자치활동에 관한 내용
마. 출결사항에 관한 내용
바. 서원어린이의 하루 기본 생활에 관한 내용
사.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 및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내용
아.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
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내용
차. 양심 ·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
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
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
파.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

붙임 1. 전주서원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전주서원초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문 대비표 1부. 끝.

전주서원초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서원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수능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본인의 허락이 있을 시는 열람이 가능하나 사적인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그 사실을 담임교사와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상담교사, 생활부장
2.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고센터(www.sewon.es.kr)
3. 학생고충 신고/상담전화(지역교육청)
4. 학생폭력신고/상담전화(도교육청)
5. 청소년 긴급전화 1388(365일 24시간 운영)
6. 여성긴급상담 1366(365일 24시간 운영)
7. 경찰청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제11조(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③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제14조(용의복장 및 신발) 용의복장 및 신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옷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한다.

② 실기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실외화는 실외활동 및 등교, 귀가 시에 실내화는 실내 활동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며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신발은 지양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화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지며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만든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피부색 등)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비품 정돈, 실내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08:50)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20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1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6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교사 2~3인,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7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29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한다.(학생보호인력 활용)

제30조(교외 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 담당부장을 통하여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일과 중 전자기기 관리 및 보관은 교사에게 위임하거나 학생 본인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협의를 통해 각 학급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③ 제20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징계의 대상) 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3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3조(징계의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징계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교사가 제37조의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37조 3호의 특별교육이수와 4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

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45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6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① 공로상
② 기타
③ 외부상 - 수시

제47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8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9조(졸업생 시상) 졸업생 시상은 각 학년도 졸업생 시상 기준에 따른다.

제50조(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교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5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2009년 5월 19일 1차 개정
【2차 개정】 2011년 4월 15일 2차 개정
【3차 개정】 2014년 4월 16일 3차 개정
【4차 개정】 2016년 7월 12일 4차 개정
【5차 개정】 2019년 0월 0일 5차 개정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주서원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수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와 31조, 전북학생 인권 조례의 학교규칙가제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내용 수정>**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②항으로 분리>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선도위원회)~~ ~~가.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나.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생활부장, 해당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부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2014.4.16.개정)~~ <삭제> **<신설>**	제23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교사 2~3인,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 (가능)~~ ~~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선도에 관한 심의 및 결의~~ ~~2) 학생 선도 지해 요소 발굴 처치~~ ~~라.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방안~~ ~~3)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및 치유기관 선정 등(2014.4.16.신설)~~ ~~마. 학생 선도를 위한 포상 심의 및 건의~~ ~~바.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선도규정에 의한다.~~ <삭제> <신설>	제24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교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5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나.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수능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가.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나.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본인의 허락이 있을 시는 열람이 가능하나 사적인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2014.4.16.신설) <삭제> <내용 수정>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본인의 허락이 있을 시는 열람이 가능하나 사적인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 (폭력예방)~~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가.~~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반드시 그 사실을 담임교사와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1.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생활부장 ~~2)~~ 2.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고센터(www.sewon.es.kr) ~~3)~~ 3. 학생고충 신고/상담전화(지역교육청) ~~4)~~ 4. 학생폭력신고/상담전화(도교육청) ~~5)~~ 5. 청소년 긴급전화 1388(365일 24시간 운영) ~~6)~~ 6. 여성긴급상담 1366(365일 24시간 운영) ~~7)~~ 7. 경찰청 117 등 ~~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라.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마. 폭력 가해학생은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한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삭제> <내용 수정 및 신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담임교사와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활용할 수도 있다. 1. 상담교사, 생활부장 2.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고센터(www.sewon.es.kr) 3. 학생고충 신고/상담전화(지역교육청) 4. 학생폭력신고/상담전화(도교육청) 5. 청소년 긴급전화 1388(365일 24시간 운영) 6. 여성긴급상담 1366(365일 24시간 운영) 7. 경찰청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신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가.~~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나.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영어체험실, 수능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라.~~ ③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2009.5.19.신설) <삭제>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③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용의복장 및 신발) 용의복장 및 신발은 다음 각 ~~호와~~ 항과 같다. ~~가.~~ ① 옷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한다.(2009.5.19.개정)(2011.4.11.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견 반영-'학생의 신분에 맞는'이라는 표현 삭제) ~~나.~~ ② 실기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2009.5.19.개정) ~~다.~~ ③ 실외화는 실외활동 및 등교, 귀가 시에 실내화는 실내 활동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며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신발은 지양한다. ~~라.~~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2009.5.19.개정) ~~마.~~ 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2009.5.19.개정) ~~바. ⑥ 화장을 하지 않는다.(2014.4.16.신설)~~ ~~사. ⑦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단, 목적을 설명하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이행·적용하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성(同姓)의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2014.4.16.신설)~~ <삭제> **<신설>**	제14조(용의복장 및 신발) 용의복장 및 신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옷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한다. ② 실기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실외화는 실외활동 및 등교, 귀가 시에 실내화는 실내 활동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며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신발은 지양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신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화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신설>**	**제1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16조(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신설>**	**제16조(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지며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만든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7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설>**	제17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피부색 등)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가.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상벌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다. 재입, 편입,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2009.5.19.신설)~~ ~~라.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2009.5.19.신설)~~ ~~마.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2009.5.19.신설)~~ ~~바.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2009.5.19.신설)~~ ~~사. 위 제 4항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09.5.19.신설)~~ ~~아.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2009.5.19.신설)~~ ~~자.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2009.5.19.신설)~~ ~~차. 재입·편입·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2009.5.19.신설)~~ ~~카.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2009.5.19.신설)~~	

~~구 분~~	~~대 상~~	~~일 수~~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5~~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1~~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현행	개정안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다.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5.19.신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2011.4.11.개정) 파. 결석의 종류(2009.5.19.신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와 위 제1항호 및 제2항호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4) 조퇴, 결과 중 위 파제13항의 1)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항 2)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항 3)3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2009.5.19.신설) <삭제>	
21. 제21조 (기본생활) <삭제>	

때	지킬 일	비고
등교 전	일찍 일어나기 주간학습 보고 학습준비물 확인	부모님 지도
등교시	부모님께 인사하기 교통법규 지키기 친구들과 인사하기	
아침 활동	책가방(사물함) 정리하기 신발정리정돈 겉옷은 조용히 스스로 힘으로 1인 1역 및 당번활동하기 창문열기	담임교사 지도
수업 시간	바른 자세로 선생님 바라보기 쓰기 자세, 말하기 자세 바로 하기 친구와 장난하지 않기	담임교사 지도
쉬는 시간	용변과 볼일을 마친 후 다음 학습 준비하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용변 후 물 내리기, 화장지 절약하기) 복도 및 계단에서 뛰지 않고 우측통행하기(2011.4.11.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건 반영) 학교 물건 아껴 쓰기	담임교사 지도
점심 시간	손 깨끗이 씻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기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식사 후 뒷정리 깨끗이 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영양교사 및 담임교사 지도
청소 시간	청소구역 책임 완수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순서 익히기 정리 정돈 잘하기	담임교사 현장지도
하교 시	친구와 헤어질 때 인사하기 선생님께 인사하기 차례 양보하기 안전하게 집에 가기	담임교사 지도
하교 후	부모님께 인사하기 손발 씻기 귀세 및 예습 복습하기 TV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시청하기 하루를 반성하기(2009.5.19.개정) 잠자 배 문안인사 드리기	부모님 지도

현행	개정안
~~제22조 (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아.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자.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차.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카.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3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거. 휴대폰을 사용하여 교육활동에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대체 체벌 프로그램에 응한다. 또, 각종 오락기기도 아예 준한다.(2014.4.16.신설)~~ ~~너.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더.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삭제> 제20조(전자기기 사용) <신설> 제24조(정보통신 윤리) <신설> 제34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신설>	제20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4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일과 중 전자기기 관리 및 보관은 교사에게 위임하거나 학생 본인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협의를 통해 각 학급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③ 제20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4조 (목적) 어린이가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하여 약속과 질서를 잘 지키며 집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집단 사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아울러 민주적 회의진행 방법을 알고 거기에 알맞게 회의에 참여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아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25조 (학급어린이회 조직 운영) 라. 구성: 회장(1명) 학급어린이회 대표로서 학급 어린이 회의를 주관한다. 부회장(1명) 회장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협의회시 사회 및 표결을 확인한다. 칠판서기(1명) 의결사항 실천 결과, 정족수 확인, 협의회 시 칠판에 기록한다. 일자서기(1명) 회의록 기록 및 회의 사항 요약 보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부장(6명: 생활부, 학습부, 봉사부, 체육부, 미화부, 도서부) 부서별 역할 분담 활동을 주관한다. 마. 구성일시: 1학기 1학기 첫 주 금요일 5교시, 2학기 2학기 첫 주 금요일 5교시 바. 선출방법 및 순서(*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1) 학생의 추천 2) 소견발표(1분 정도) 3) 무기명투표 4) 개표 사. 임원의 임기 및 추보자격 1) 임기: 학년도 한 학기 2) 자격: 당해 학급 소속 학생(단 1학기 정부회장은 2학기에 출마할 수 없음) 26. 제26조 (전교 어린이회 조직 운영) 아. 구성 시기: 1학기 1학기 둘째 주 금요일 7교시 어린이 회의실 2학기 2학기 둘째 주 금요일 7교시 어린이 회의실 자. 구성 인원 1) 회장: 1명(6학년) 2) 부회장: 2명(5, 6학년 남녀 구분 없이 각각 1명씩) 3) 총무: 1명 4) 서기: 1명 5) 부장: 6명(생활부, 학습부, 봉사부, 체육부, 미화부, 도서부) 6) 4-6학년의 학급 어린이회 회장단 7) 역할은 학급 어린이회와 동일함 차. 입후보 자격 1) 회장: 6학년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담임과 급우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2) 부회장: 5, 6학년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담임과 급우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3) 기타 임원: 기타 각 부 부장은 회원이 구두 추천하여 거수로 선출한다. 카. 추천인원: 회장 담임과 급우가 추천한 학생으로 2명 이내. 부회장 담임과 급우가 추천한 학생으로 2명 이내.	제21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다. 선출방법 및 순서~~ ~~1) 담임과 급우가 추천한 입후보자 소개~~ ~~2) 입후보자 소견 발표(1분 정도)~~ ~~3) 회장단 투표 순서: 5학년 부회장 투표 → 6학년 부회장 투표 →전교 어린이 회장~~ ~~4) 투표 학년 순서: 4학년 →5학년 →6학년~~ ~~5) 개표~~ ~~6) 당선자 발표 및 소감발표~~ ~~퍼. 선거권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어린이(직접선거)(2009.5.19.개정)~~ ~~허. 회장 및 부회장 당선기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각 학급학생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2009.5.19.개정)~~ ~~고. 임원의 임기: 학년도 한 학기에 한한다.~~ ~~노. 운영의 실제~~ ~~1) 정기회의: 격주 금요일 7교시(학교교육과정 학사 일정 반영)~~ ~~2) 하는 일:~~ ~~·금주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반성~~ ~~·내주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결정~~ ~~·각부 반성 및 내주 계획 발표~~ ~~·학교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 결정~~ ~~·학교 당면 문제 협의~~ ~~3) 임시회의: 필요시~~ ~~도. 회의 진행 순서~~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금주생활반성~~ ~~4) 금주 각부 활동 반성~~ ~~5) 내주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결의~~ ~~6) 각부 계획 발표~~ ~~7) 기타 협의~~ ~~8) 건의 사항~~ ~~9) 선행아 추천~~ ~~10) 선생님 말씀~~ ~~11) 교가 제창~~ ~~12) 폐회사~~ <삭제> <신설>	
~~제28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나. 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체벌금지) <신설>	제3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교사의 권한) <신설>	제3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신설>	제3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 담당부장을 통하여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5조(징계의 원칙) <신설>	제35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학생체벌) 학생에게 체벌은 금지하며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로. 학교 내 봉사~~ ~~모. 특별교육이수(훈육, 훈계)~~ ~~보. 사회봉사(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특기사항란에 사유 기재 않음)~~ <삭제> <신설>	제3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방법) <신설>	제3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제3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신설>	제3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신설>	제4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신설>	제41조(징계의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2조(사후 조치) <신설>	제42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3조(징계의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징계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전주서원초등학교 체벌대체규정 2013.11.28.신설)~~한다. ~~가.~~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② 교사가 제 ~~28조~~ 37조의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18-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다.~~ ③ 학교장은 제 ~~28조~~ 37조 3호의 특별교육이수와 4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3.18-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삭제>	제43조(징계의 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징계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교사가 제37조의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다.~~ ③ 학교장은 제37조 3호의 특별교육이수와 4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제46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가. 학교장상 졸업생(학년말)~~ ~~나. 출결부문 6년 개근상, 6년 정근상~~ ~~다. 학력상~~ ~~나.~~ ① 공로상 ~~다. 선행상~~ ~~라. 효행상~~ ~~마.~~ ② 기타 ~~바.~~ ③ 외부~~단체~~상 - 수시 <삭제>	제46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① 공로상 ② 기타 ③ 외부상 - 수시

현행	개정안
~~제38조 (모범부문)~~ ~~가.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가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나.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삭제>	
~~제39조 (근면부문)~~ ~~가. 6년 개근상: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나. 6년 정근상: 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이내, 지각, 조퇴, 결과가 총 9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2011.4.11.개정)~~ <삭제>	
~~제40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삭제>	
~~제42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발의),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심의 및 결정), (연수 및 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진주시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실무추진위원회 규정 2013.11.28.신설)~~ <삭제> 제5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제52조(개정안의 발의) <신설> 제5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신설> 제54조(심의 및 결정) <신설> 제55조(연수 및 교육) <신설>	제5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교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5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현행	개정안
~~제43조 (개정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삭제>	
~~제44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삭제>	
부칙 제2조 <신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첨 2016학년도 졸업생 사상 기준~~ <삭제>	